

WTO 체제하의 우리나라 국제 통상 전략

International Trade Strategy of Korea
under WTO System

朴 吉 相* · 金 蓉 奎**
(Park, Kil Sang · Kim, Yong Kyoo)

목 차

- I. 머 리 말
- II. UR 협상과정과 타결의 의의
 - 1. UR 협상의 출범배경
 - 2. UR 협상과정
 - 3. UR 협상타결의 의의
- III. WTO 협정의 주요내용
 - 1. WTO의 설립
 - 2. WTO협정의 주요내용
- IV. WTO체제하의 우리나라 국제통상 전략
 - 1. 기업의 세계화
 - 2. 전략적 제휴 활성화
 - 3. 수출산업의 구조조정 노력
 - 4. 반덤핑, 보조금 지급 규제에 대한 대책
 - 5. 신분야 국제 통상 대비책 강구
- V. 결 론

* 尚志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 尚志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I. 머리말

세계경제는 UR 협정의 타결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국제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종전 세계의 자유무역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는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와 신보호주의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UR 협정의 체결로 종전의 공산품 부문에서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분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과 아울러 공정성, 자유주의 무역원칙도 보다더 명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고 WTO체제는 GATT와는 다르게 명실상부한 국제 조직체로써 권능과 사법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의 「틀」이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UR 협정과 WTO체제 등의 국제기구들의 성격규명과 이러한 체제로 인한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하여지고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통상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II. UR 협상과정과 타결의 의의

1. UR 협상의 출범배경

WTO를 탄생시킨 UR(Urguay Round, 우루과이 협상)은 1948년 GATT 발족이래 여덟번에 걸친 세계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다수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도시인 푸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푸타 델 에스테 선언(Punta del Este Declaration)을 통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함으로써 발족하게 된 협상이다.

여기서 Round란 등근 탁자를 의미하는 단어로써 여러 사람이 등근탁자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협상한다는 뜻으로 Round를 회의 용어로 나타내면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s)으로 해석할 수 있다.

WTO는 이러한 UR의 결과 탄생되게 되었는데 1948년에 발족한 GATT 주도하의 UR은 결과적으로 GATT 체제를 붕괴시키고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GATT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하여 세계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통한 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발족하였다. 이러한 GATT는 그동안 UR까지 8개의 대규모 라운드를 개최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와 세계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서 GATT의 주요 원칙을 들면 첫째, 어떤 가입국에 주어진 특혜는 무조건적으로 타가입국에게도 부여된다는 최혜국 대우(MFN : Most-Favoured-National Treatment)

원칙과 둘째, 내국세 및 각종규제에 있어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원칙과

세째,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와

네째, 국제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하여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바탕에서 보호 수준의 인하고섭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이러한 UR의 출범배경은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저 성장기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경제는 아주 악화되었다. 일본과 대만, 홍콩, 한국 등의 소위 신흥공업국(NICs)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로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확대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쓰게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섬유, 철강 등 사양산업보호를 위해 GATT규정을 위배 또는 남용하는 수입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는 시장질서 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등의 소위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가 성행되었다.

이에따라 GATT의 분쟁해결 및 감시기능의 효율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선진국들은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양자간 통상 압력을 이용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다자간 GATT체제 안으로 통상문제를 끌어들여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선진국은 상품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열세이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이러한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GATT를 통한 다자간 방식에 의한 시장개방 촉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반면에 방어적 입장에 있는 일본, 신흥공업국들은 미국, EC 등으로부터 시장개방 압력이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압력을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무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의도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UR의 개시는 1983년 5월 윌리암스버그 경제회담에서 처음 제기되어 1986년 9월 우루과이 푸타 멜 에스테시에서 다자간 협상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을 채택함으로 GATT주관하의 제 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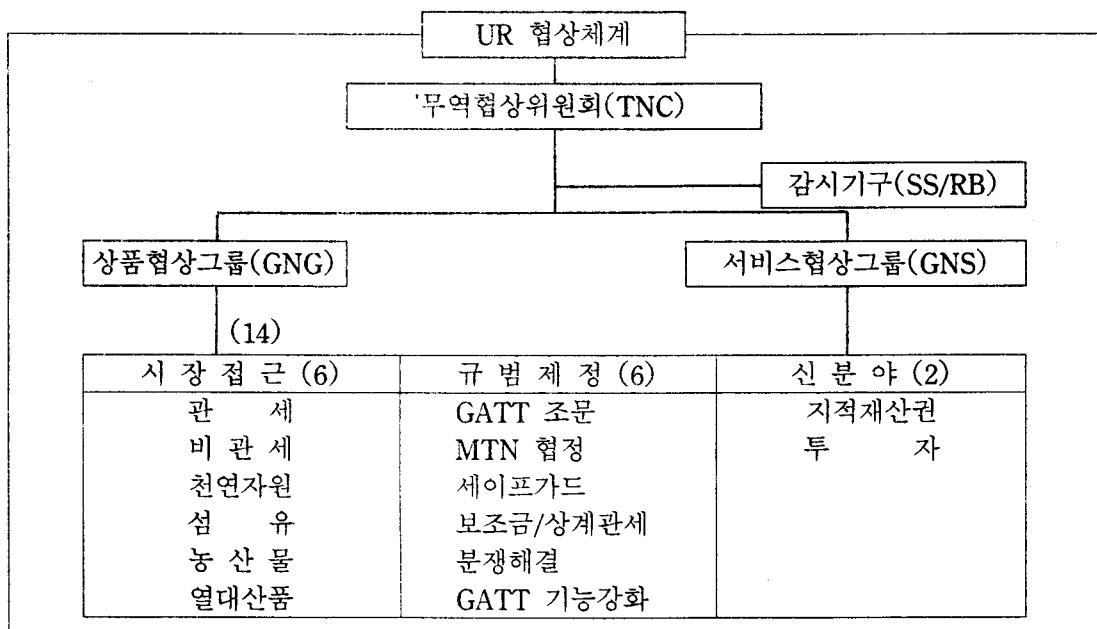
2. UR 협상 과정

가. UR 협상 추진체계

UR 협상 체계는 <표 2-1>와 같이 1981년 1월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개최하여 UR 협상구조를 합의하였는데 상품협상그룹(GNG)을 14개 그룹으로 나누고, 서비스협상 그룹(GNS)를 1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감시기구(SS/RB)는 협상관련 사항에 대한 각국의 동결 및 복귀(Standstill & Roll back)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2-1> UR 협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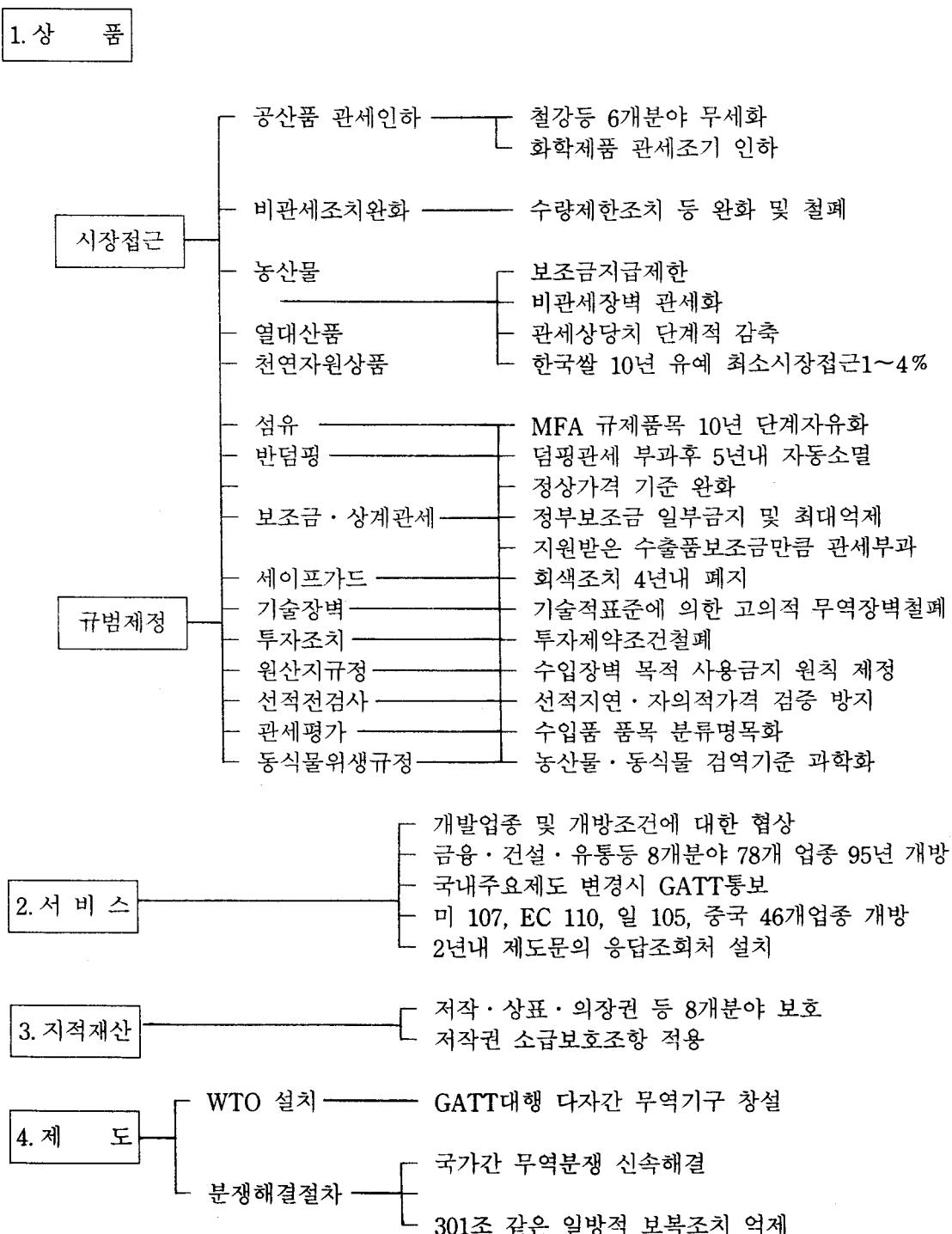
나. 주요의제

협상의 기본목표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GATT체제의 강화,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 보호 등 신분야(New Issues)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마련을 통하여 1990년 대에 적용될 세계무역 규범의 정립과 1990년 까지 최종협상 결과의 도출이었다.

위의 협상체계하에서 UR 협상은 상품시장 개방과 아울러 서비스 등의 새로운 분야를 협상에 추가함으로써 협상의제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GATT체제하에서 예외 인정을 받아온 농산물 교역이 협상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표 2-2〉 UR 협상의 주요 의제



3. UR 협상 타결의 의의

UR 협정 타결은 관세와 특정품목의 무관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하였으며 GATT체제 밖에서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부과되었던 섬유와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로 단일화 하도록 하여 GATT체제 내로 끌어들임으로 무역장벽을 점차적으로 낮추었다.

또한 명료성과 합리성 부족으로 인하여 각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가 많았던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와 긴급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그 남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분쟁해결 측면에서도 종전보다 객관적인 분쟁해결 절차 도입으로 자의적인 무역규제 소지를 줄이고 자유무역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통신, 운송 및 서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별도의 무역규범을 새롭게 제정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이분야의 시장개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국제교역이 증대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거의 GATT가 단순한 국제협정으로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개선하여 UR협정은 무역에 관한 UN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 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다시말하면, UR 협정 타결 결과 WTO의 설립으로 그동안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한 하나의 협정문에 불과하였던 GATT체제를 명실상부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거듭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III. WTO 협정의 주요내용

1. WTO의 설립

가. WTO의 조직

UR 협정으로 인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이다.

〈표 3-1〉에서 보듯이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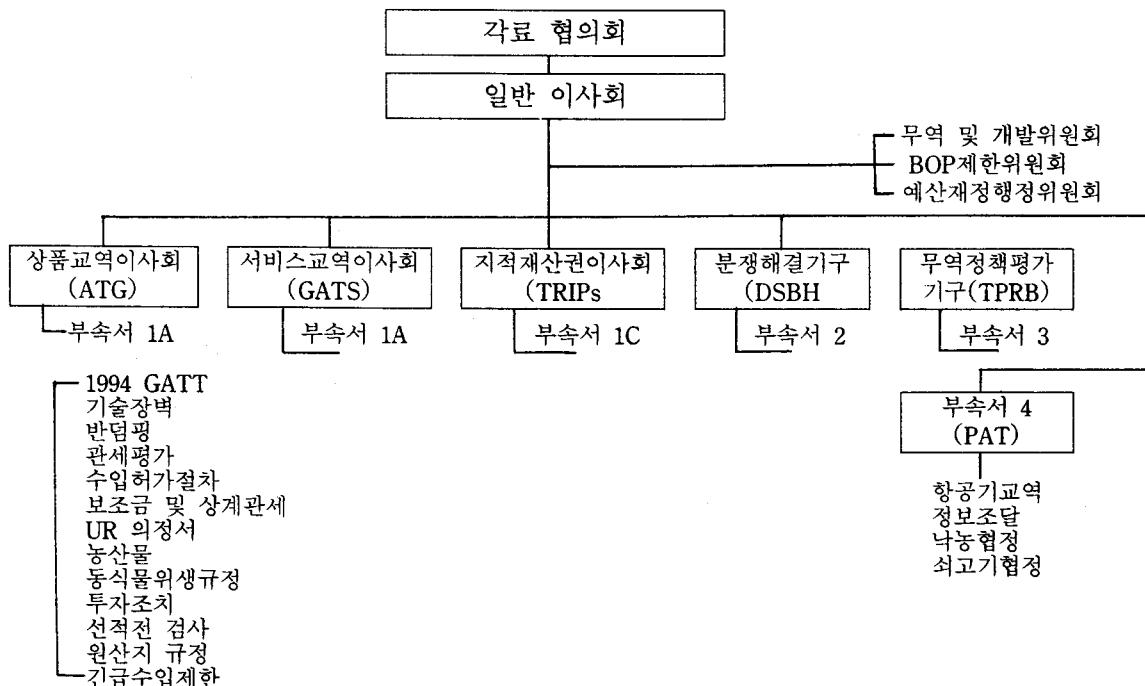
상품분야에서도 과거의 동경라운드의 9개 협정 중 5개를 다자화시키고, 농산물, 섬유 등을 GATT로 복귀시켰으며,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동식물위생규정 등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로 제정하여 상품분야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을 이루하였다. 다만, 항공기,

정부조달, 낙농, 쇠고기 협정은 아직도 다자화되지 못하고 일부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복수간 협정(Pluriateral Trade Agreement : PTA)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의 동경라운드 협정이 법적으로는 GATT와 무관하였던 것에 비하여 4개의 복수간 협정은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WTO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상품분야의 무역규범에 대칭되는 서비스분야의 무역규범도 새로이 제정되어 WTO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과거의 GATT가 창설된 이후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이번 UR 협정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GATT도 많은 수정보완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비스는 UR 협상에서 당초에는 규범의 제정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초 자유화약속에 관한 협상도 종결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WTO의 주요 3분야의 하나로 부각되었고 이 분야의 협상은 당초에는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정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신지적재산권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협정은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협정은 아니며, 기존 국제협약에 추가하는 국제협약 플러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1〉 WTO의 구성도



WTO는 분쟁해결절차를 통일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또한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고 교차보복을 인정하는 등 실효성도 증대시켜 WTO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무역정책평가기구(TPRB)가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함으로서 사전적으로 무역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게 될 것이다.

나. WTO의 의사결정방식

WTO는 기본적으로는 과거GATT체제와 같이 합의제(consensus)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사항 또는 협정조문을 수정하는 사항 등 중요한 수정변경의 경우에는 단순한 과반수 표결이 아닌 2/3 또는 3/4이상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조문 중 최혜국대우와 관련되는 조문과 관세양허에 관하여는 전 회원국이 수락하지 않는 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협정이나 지적재산권 협정 조문 중에서 회원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사항과 서비스협정의 제1,2,3부(서비스의 정의, 일반적 의무 및 구체적 의무)에 대하여는 회원국 2/3 이상의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서만 수정조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단 회원국 3/4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원국의 수락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를 탈퇴하도록 하고 있어 WTO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한편 회원국의 의무나 권리상에 변동이 없는 기타 조문의 변경은 회원국 2/3이상이 수락하면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역시 WTO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계속 합의제를 유지하여 개정이 어렵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정안의 채택에 관하여도 90일 간의 십사기간을 거쳐 합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2/3이상의 동의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신속성이 보장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회원국 3/4의 동의가 있으면 최혜국대우 조항, 분쟁해결절차 등의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정이 가능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WTO를 탈퇴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WTO에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GATT가 단순히 합의제에만 의존하였던 것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WTO협정의 주요내용

UR 협정의 소득 및 무역창출 효과에 대하여 OECD는 전세계적으로 UR 협정 발효후 10년간

약 2,000억 달러의 추가적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GATT에서는 연간 7,500억 달러의 무역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협정에 따른 총체적인 평가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었으나 약간 선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UR 협정이 타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 섬유 및 의복, 분쟁해결절차 등에서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유리한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하여 월등 유리한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어 그 평가가 어려우며, 관세 인하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무세화 또는 관세조화를 통하여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관세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개도국은 기존 관세율이 높아 절대적인 면에서는 개도국의 관세인하 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UR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미국과 EC의 주도 하에 반덤핑 규정이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수정이 이루어진 점과 서비스분야에서 선진국이 계속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협상시한을 연장한 점등이 다소 선진국에게 유리한 결과였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UR 협정은 다자간 교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하여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완화시키며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교역질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세화 및 관세조화로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4년 내에 폐지하기로 한 것등은 많은 무역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섬유와 농산물에서도 모든 수입제한 조치가 폐지되고 관세만이 유일한 장벽수단으로 남게 되어 무역장벽이 완화되었다.

그동안 각국에서 보호무역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등이 명료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향후 남용이 억제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공정한 교역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제교역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별도의 규범이 제정되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개방 약속까지 이루어져 이를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교역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 농산물분야

농산물 부문은 국경조치, 국내보조금 감축, 수출보조 감축의 3분야로 협상이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국경조치에 관하여는 수량제한 등의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관세만을 유일한 보호수단으로 하는 예외없는 관세화와 지나치게 높은 관세로 수입량이 미미할 경우에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Access)을 허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쌀에 대하여 관세화 유예기간을 인정받음으로써 약간의 예외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협상기간 동안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였던 카나다, 스위스, 멕시코는 모두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하였다.

한편 모든 국내보조금을 합산하여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감축대상 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 모두 총량화하여(AMS) 이를 2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도국의 경우는 2/3수준인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허용보조금의 경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서비스정책과 생산에 대한 직접보조 그리고 개도국우대조치로서의 허용보조금이 인정되며 그 액수는 정부서비스정책의 경우 6천687억 원이며 생산지에 대한 직접보조는 10억7천억원 그리고 개도국우대는 123억원이다. 수출보조금은 금액과 물량기준으로 각각 36%와 21%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산물교역은 특히 과거에 GATT에서 사실상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GATT규율 밖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UR 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교역에 관하여는 최초로 국제규범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식량수출국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수출국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함으로써 식량수입국의 이해도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접근분야에서 농산물협상 전 품목에 대하여 관세화를 양허하였다. 기존의 수입제한 품목은 기준년도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을 관세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쌀의 경우에는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접근만을 인정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UR 협정이 발효되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 국내 쌀시장의 3%에서 5% 까지 수입을 하고 2005년 부터는 무조건적인 관세화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 분야

공산품의 관세인하는 제 7차 동경라운드와 유사한 가중평균관세율 1/3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1993년 7월 동경의 4자회담에서 무세화 및 관세조화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관세인하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무세화는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의 품목에 적용하기로 하고 고관세품목의 하향 평준화(5% 내지 6.5%로 조화시킴)를 위한 관세조화는 화학제품에서 적용하기로 하였다.

섬유교역은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하여 국별쿼터제도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 UR섬유협정으로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수량규제조치의 총 51%를 폐지함으로서 교역 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1998년1월1일까지는 1990년 기준 총 수입량의 17%를 WTO에 복귀시키고 2002년까지는 1990년총수입량의 18%를 WTO에 복귀시키고 2005년 1월 1일까지 51%를 WTO에 복귀시킨다는 내용이다. 1995년1월1일 이후 모든 섬유관련 규제는 섬유교역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ard)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통제를 받게된다. 특히 수입증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이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발동하고자 할 경우도 TMB에 통고해야하며, TMB는 피해판정에 대해 조

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 서비스분야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하에 UR 서비스협상은 세계서비스교역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규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크게 일반협정, 분야별부속서, 각국의 시장 개방계획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비스 분야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분야이기는 하지만 처음 협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제정된 서비스 협정은 최혜국대우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최혜국대우 의무면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국내규제제도, 자격인정제도, 보조금, 긴급수입제한, 정부조달 등이 모두 후속협상으로 남겨졌다.

UR 서비스협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향후 서비스교역자유화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확대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협상의 일부인 양허표에 기재된 규제조치이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것으로 간주(Negative List System)되어 해당 서비스업의 규제수준은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세째, 서비스산업 인가, 자격요건 등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균형있는 자유화 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추후 협상과정에서 규정의 국가간 조화노력이 가속화 될 것이다.

네째, 최혜국대우가 기본적 의무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쌍무적 협상에 의한 서비스시장개방은 회원국에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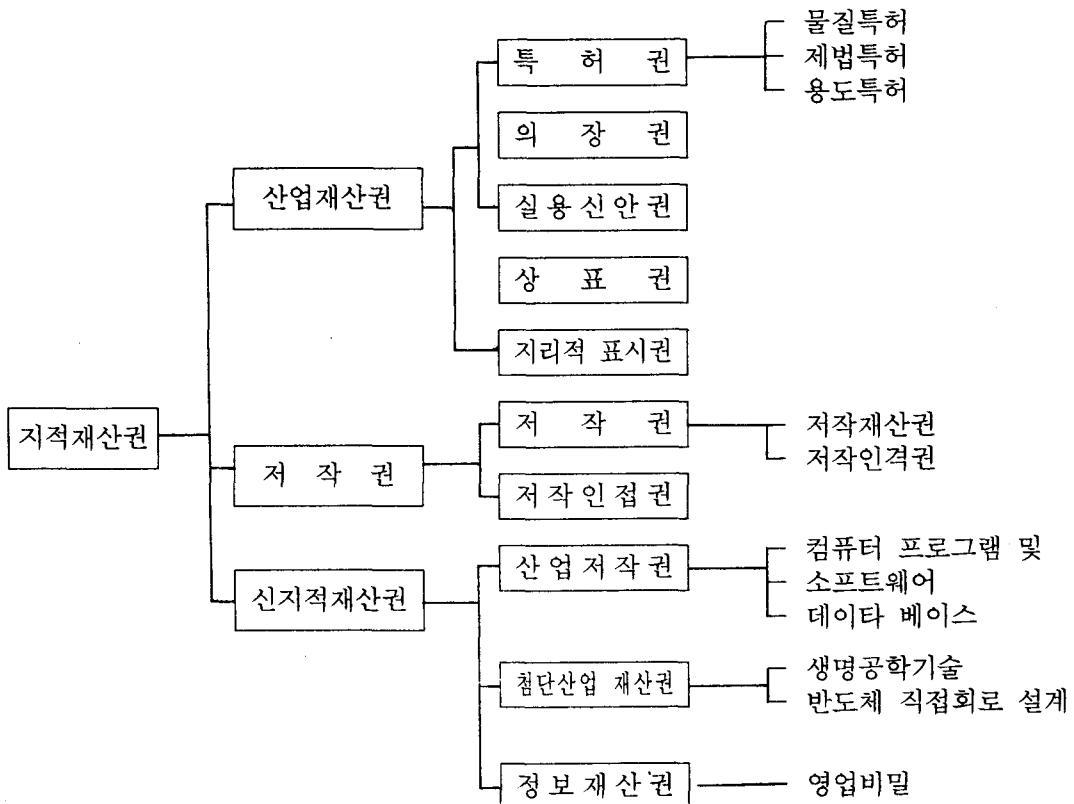
다섯째, 외국 서비스기업의 상업적 주재가 인정됨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노동력이동에 대한 국제규범노력이 가속화 될 것이다.

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 분야는 선진국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초의 위조상품방지라는 목표보다 범위가 확대된 포괄적인 협정을 제정하였는 바 개도국이 UR 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y Right) 및 신지적재산권의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의장권, 상품권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한다.

〈표 3-2〉 지적재산권의 분류



한편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체산권(Industrial Copy Right)과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첨단기술 및 전자, 정보산업 관련 첨단기술 등의 첨단산업재산권과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산, 제조, 기획, 영업 등의 정보가 상품화됨에 따른 정보재산권(Information Property Right)을 포함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기존 국제협약 플러스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여권,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저작인접권의 보호, 지리적 표시권의 인정, 집적회로배치 설계권의 보호 등이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영업비밀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마. 규범의 강화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제도 등이 주로 선진국에 의하여 남용되어 온 점을 중시하여 이번 UR 협정에서는 관련협정을 명료화, 객관화 함으로서 남용의 여지를 축소시켰다.

GATT 제 6조의 1항은 '체약국은 외국의 상품이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의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는 이 덤픽은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UR 협정에서는 덤픽마진이 경미하거나, 덤픽수입량 혹은 그로인한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경우 조사는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최소개념(Deminimis)을 인정하였다. 즉,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단일시장에서 3%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세계전체시장에서 7% 미만일 때, 반덤핑 제소가 면제되며, 덤핑마진은 정상가격대비 2% 미만일 경우 면제된다. 덤핑마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정상가격의 인정범위 또한 확대하였으며, 구성가격 산정에 실제자료를 인정하는 등 객관성이 제고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소멸은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로 부터 재심사를 통하여 반덤핑조치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관세 부과일 혹은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의 경우에는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과 같은 회색지대조치가 협정발효 후 4년 이내에 모두 폐지되는 등 교역자유화가 추구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선별적인 수입 제한조치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국제무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로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번 UR 협정에서는 각국이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폐지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상계관세를 지급할 수 있는 3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째, 보조금의 지급이 무역상대국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금지보조금이라하여 협정발효 후 3년 이내에 폐지하게 되어있으며,

둘째,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금과, 세째, 기타 상계관세부과가 가능한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구분한다.

한편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할 수 없고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사.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었는데 비하여 WTO체제하에서는 관련협정이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가 모든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를 관掌한다.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패널의 결정 및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시 양허 및 기타의무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DSB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Consensus)에 의한다.

패널에서는 패소국에 의해 상소가 가능하도록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상소기구는

DSB에 의해 설립되며 7인으로 구성하되 한사건에 대하여 3인씩 교대로 상소업무를 담당한다.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일방 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 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권리 및 결정사항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을 인정함으로서 보복조치의 실효성을 증대시켰으며, 각국은 패널이 협정위반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IV. WTO 체제하의 우리나라 국제통상 전략

1. 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WTO체제는 향후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는 출발점이 된다.

21세기의 주요특색은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운송비와 통신비용의 감소로 세계시장이 동질화 되어 가는 현상이다. 아울러 WTO의 수립은 국가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농산물과 서비스교역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단위별로 구분되는 시장이 사라지고 세계욕구와 희망이 동질화 되면서 소위시장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of Markets) 현상이 촉진된다. 즉 종전에는 동일국가내에서 국내기업끼리 경쟁하였으나 이제는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국제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기업 최고경영자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성장배경은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하에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UR 협정타결로 이제는 보조금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의 대규모국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국제시장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경영마인드의 안목이 국내에서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인 무역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은 자기산업의 비교열위부문은 해외직접 투자를 통하여 생산및 판매시설을 해외에 이전하여 입지적우위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세째, 세계시장의 소비자욕구가 동질화됨에 따른 범세계적 마케팅(Global Marketing)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R&D, 마아케팅에 있어 표준화 전략을 사용하여 규모의 경제와 연

구개발의 경제성과 마아케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활성화

UR 협상 타결로 역외적 차별을 위한 지역주의 경향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접국 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주의 움직임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지진출의 확대로 지역경제 체제확립 및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의 주요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그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투자기업이 부족한 부가가치 부문을 투자대상국의 우위부문과 상호 결합한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표 4-1〉과 같이 세계의 주요기업들은 서로가 생산, 기술, 판매, R&D 분야 등의 제휴를 통하여 자기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경쟁력 열세부문을 타기업과 제휴함으로써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휴에 가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는 국제경쟁력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표 4-2〉는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부문의 전략적 제휴현황이다.

〈표4-1〉 세계주요기업간 전력적 제휴현황

업 종	제 휴 유 형	제 휴 업 체
자 동 차	생산제휴(합작방식)	美 GM－日 Toyota
	생산 및 판매 제휴	美 Ford－日 Mazda
	생산제휴	日 혼다－日 이스즈
	생산제휴 및 합병	佛 르노－스웨덴 볼보
반 도체	생산 및 기술 제휴	美 모토로라－日 도시바
	생산제휴(OEM)	日 히타치－금성 일렉트론
	생산제휴	美 TI－日 신호제강소
	반도체 공동 개발	IBM－도시바－AT&T－후지쓰등 IBM－지멘스－도시바, 256M DRAM 공동개발
컴 퓨 터	기술, 생산, 판매 중복 제휴	美 IBM과 기타 컴퓨터업체
	기술, 공급제휴	美 DEC－佛지멘스－美 암텔
	기술, 공급제휴	日 후지쓰－獨 지멘스－美 암텔
	공동개발을 위한 그룹 결성	UI 및 OSF 시스템 참가 기업
항공산업	국제컨소시엄(수평제휴)	Airbus(유럽 4개국)
	수직적 제휴	美 보잉사－日 항공기업체
	기술제휴	美 GE－Sneecma, 피아트 등
	복합제휴	International Aero Engines

〈표 4-2〉 韓國 기업의 주요 전략적 제휴 현황

업 종	제 휴 형 태	제 휴 업 체	제 휴 내 용
자 동 차	기술 자본제휴	현대차-미쓰비시	자본 참여 및 기술도입
	기술제휴	대우-이스즈-닛산	상용차 관련 기술제휴
	복합제휴	가아-마쓰다-포드	생산기술제공-판매의 복합제휴
전자산업	기술 자본제휴	삼성전자-美 TI	자본·기술제휴로 반도체 공동 생산
	기술제휴	삼성전자-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공동개발, 특허공유,
	자본 생산제휴	금성사-히타치	기술, 생산설비의 효율적 결합
	자본제휴	금성사-제니스	자본제휴로 공동 기술개발 및 도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전략적 제휴의 실태와 활용 방안」, 1993. 11.

3. 수출산업의 구조조정 노력

향후 WTO체제하에서는 국경이 없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물량의 양적인 증대와 수출품질의 질적인 향상을 의미하는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즉,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전략이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자체기술개발력을 강화하고 R&D투자를 계획적으로 확대하며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產, 學, 研협동·연구체제를 이루어 전문적인 기술인력양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경쟁력이 약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며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낮아있는 섬유, 신발 등의 경공업분야는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세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빨라짐에 따라 물류 및 정보 통신분야가 경쟁우위의 주요 우위원천이 되기 때문에 도로, 항만, 철도, 유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설비의 확충으로 물류비용을 줄이고 무역자동화 등의 정보 통신망 구축을 통해 세계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요구된다.

4. 반덤핑 보조금지급 규제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한국제품이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 진입할 때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아왔다. 이러한 덤프제소의 남용은 UR 협정의 체결로 관계협정을 명료화, 객관화 함으로써 남용소지를 줄

이도록 하여 한국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구체적으로 반덤핑 규제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반덤핑 규제 대상가격이 정상가격의 인정기준 즉,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이 하일 경우에는 전부 해당되었으나 UR 협정에서는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의 2% 이내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주는 종전보다 완화된 규제를 두고 있다.

아울러 UR 협정은 덤픽방지 관세부과제 외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덤픽수입량이 수입국내 단일시장에서 3%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세계전체시장에서 7% 미만의 점유율을 가질 때 덤픽방지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 진출할 때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덤픽제소문제가 이전보다 나아지는 여건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보조금 지급규제문제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산업 및 수출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이 대부분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지원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UR 협정에서 보조금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각국이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허용보조금)와 폐지하는 경우(폐지보조금)와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상계관세를 지급(상계가능보조금) 할 수 있는 3가지 보조금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의 세분화를 이용하여 금지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고 상계가능보조금은 무역 왜곡효과가 없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산업구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 신분야 (New Round) 국제통상 대비책 강구

1994년 UR 협정타결로 인한 WTO체제 출범으로 모든나라의 시장개방확대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제는 환경(GR), 경쟁정책(CR), 노동(BR), 기술개발(TR) 등에 대한 새로운 의제들이 <표 4-3>와 같이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문제는 선진국 입장에서 향후 환경문제를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무역 규제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육성과 국내환경제도의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노동문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노동자의 권리침해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최저임금제 보장, 노조의 자유활동보장,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분야의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큰 부담은 없으나 저임금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현지 투자기업들에게 불리한 영향이 예상된다.

세째, 경쟁정책 부문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부상되는 이유는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의 차이가 통상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통상협상의 문제는 개방추진과 경쟁을 왜곡시키는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의 차이를 없애는 경쟁조건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국내시장경쟁여건을 감안해 볼 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과 경쟁정책이 효율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문제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축적된 과학기술의 무임승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식하에 선진국은 지적재산권문제를 주요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표 4-3〉 WTO체제하의 신분야

	UR협정 이행	환경문제	노동문제	경쟁문제	기술문제
목 적	무역자유화 공정무역확립	환경기준의 국제표준화	노동조건의 격차축소	경쟁조건의 격차축소	기술정책의 표준화
WTO본격논의 예상시기	(종결)	2년 후	5년 후	5년 후	5~10년 후
선진국의 中期대응	UR미참여 분야에 대한 개방압력	다자논의 주도 쌍무적 활용	무역규제, 쌍무적 활용	지역협정 확산 역외적용	첨단산업육성 논의분위기조성
주요 변화대상	국경장벽 국제무역규범	제품생산 방식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조직 경쟁정책	첨단기술 지원정책

자료 : 최낙균, 「Post-UR시대의 산업별 대응 방안」, 정책협의회자료, 산업연구원, 1994.4

V. 결 론

1994년 UR 협정 체결에 의한 WTO의 출범으로 각국간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통상전략을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세계화추진을 이룩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사고방식의 전환과 비교열위에 있는 부가가치 부문은 해외직접투자로 부가가치 창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세계시장 소비자 욕구의 동질화에 따른 범세계적 마아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모색으로 기업간의 공동 R&D, 공동 마아케팅, 자사가 보유치 못한 부가가치 부문 공유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자의 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세째, 수출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수출물량의 양적증가와 수출품질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네째, 반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대책으로 반덤핑의 경우 UR 협정에 완화된 규정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제통상 우위에 있으나 보조금지급 경우 금지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상계가능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이전하고 상계가능 보조금은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분야의 국제통상(노동, 경쟁, 기술, 환경)대비책으로는 현재초기의 논의 단계이나 이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등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연구 대응체재확립으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 용 일,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3.
- 김 지 흥, "WTO체제하의 대응전략", 국제경영연구, 제5권, 1994. 8.
- 문 창 권 · 최의록, 「무역정책」, 삼영사, 1993. 8.
- 배 광 선, UR이후의 무역통상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산업연구원, 1995. 2.
- 이 장 로, 「국제마케팅론」, 무역경영사, 1993.
- 윤 식 · 조현태, 미국통상정책 결정요인, 산업연구원, 1993. 6.
- 최 낙 균, Post-UR시대의 산업별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4. 4.
- 황 남 일, 「무역정책론」, 대왕사, 1994. 8.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5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4. 12.
- 한국무역협회, 전략적 제휴의 실태와 활용방안, 1993. 11.
- APEC, Asia-Pacific Cooperation-Sixth Ministerial Meeting, 1994.
-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licies and Trends in the 1980s, 1992.
- OEC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Review and Outlook, 1991, 1992.
-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4.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